

소방·방재제품의 PL과 표시결함 예방대책



조 선 호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

1 머리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제조자나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위험요인이 곳곳에 내포됨으로써 제도적인 보장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즉 배상, 환불, 교환, 리콜, 판매중지, 수거, 폐기, PL 등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제조자나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환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다. 쉽게 말하면 제조물을 만들거나 공급한 사람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소방·방재제품도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제품의 특성상 일반 제품들 보다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제조업자나 소비자의 인식 모두가 낮은 편이다. 어찌보면 PL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현실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시점을 즈음해 다시 한번 제조물책임,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밉고 쓸 수 있는 소방·방재제품이 갖추어야 할 표시상의 기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② 소방·방재제품과 제조물책임

가. 소방·방재제품의 특성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비상벨, 가스누설 경보기, 구멍조끼, 구멍로프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이 소방·방재제품이다. 소방·방재제품은 분명히 공산품이지만 생산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전제품이나 생필품과 같은 일반공산품과 다른 점이 많다. 즉,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등과 같은 것은 소비자와 사용자가 대부분 일치하고 생산자는 판매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방법을 잘 아는 것은 물론, 고장나면 수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수리불능이 되면 신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성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지라도 디자인이나 기능의 차이에 의한 소비자의 기호나 유행변화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매우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제품은 이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반공산품이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사용되는 반면, 소방시설은 대부분 공용물품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에만 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구입되고 설치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는 일반국민이고 구입자는 건축주이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시공업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용자는 제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소방시설이 비상시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방법도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소방제품은 생산과 설치에서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법령으로 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방제품의 특성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소방제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자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애로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제품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느 제품보다도 제조물책임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분야인 것이다.

나. 제조물책임의 개요

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제조물책임이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약 3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역사는 영국의 과실행위책임에 관한 판례법에서 기원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변천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입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

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③ 표시상의 결함과 예방대책

가. 결함의 종류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제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요한 논점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제조물의 결함인가 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는 결함을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결함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

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즉,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경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경고미비)와 경고를 하였으나 미흡한 경우(경고불충분)가 해당된다.

(4) 기타 유형의 결함

이것은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광고매체(신문, 방송), 홍보전단·카탈로그 등에 기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것은 제조업자는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공급에 이르기까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표시상의 결함과 소방·방재제품

표시상의 결함을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고내용** 경품으로 받은 접는식 등받이용 의자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끼임. 낀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손톱이 떨어져 손가락 살점 4~5mm가 잘림. 의자는 투명한 비닐 포장에 들어 있었으나, 취급설명서 같은 것은 없고 별다른 주의표시 등도 적혀있지 않았음. 의자에 안전 스톱퍼 같은 것도 붙어있지 않았음.

▶▶**사고원인** 금속 파이프와 나일론 천으로 만든 접는식 의자로 등받이와 앉는 면을 넓혀 사용하는 순간, 등받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파이프와 앉는 면을 구성한 파이프가 교차하는 부근에 취급설명서와

본체의 주의표시가 없었고 해서 별다른 생각없이 피해자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앓을 때 등받이에 힘이 들어갔을 때 손가락이 안쪽의 파이프 사이에 가워처럼 낀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상처를 입은 것이라 추정됨.

▶▶ **재발방지조치** 취급설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시킴과 함께 본체 파이프 부분에 「손가락이 끼는 것에 주의」라 표시하기로 함.

이 사례는 아주 경미한 것이지만 표시상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이것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자가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제품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표시상의 결함을 논하기 전에 누가 제조한 제품인지도 모르는 무적(無籍)제품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소방제품 분야의 신뢰도를 극심하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결함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많은 소방제품들은 결함의 정도를 넘어서 제품으로서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에 실시하였던 소방제품 표본조사 결과 중 표시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형식승인(검정)대상 제품이 아닌 것 중 사용량이 많은 3개 제품의 표시상태를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방제품과 관련한 제조물책임의 논의는 제조물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앞서 소비자가 당할 수 있는 상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모든 공산품은 누가 만들었는지(제조자 표시), 어떤 성능을 가진 제품인지(성능표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사용설명서)를 우선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만의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주의표시와 경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개도 없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불량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한 술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걱정하지 못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제조자 표시마저 없는 제품은 문

〈표 1〉 소방제품의 표시상태

제품명	표시 조사대상	제조자표시			성능표시			사용설명서		
		있음	없음	표시율(%)	있음	없음	표시율(%)	있음	없음	표시율(%)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8	5	3	62.5	4	4	50	0	8	0
축광표지	4	3	1	75	0	4	0	0	4	0
위치표시등	7	1	6	14	0	7	0	0	7	0

제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대상마저도 알 수 없다. 요즘은 일회용 제품에도 대부분 표시사항이 엄격하게 지켜진다. 이러한 것은 법적의무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법적인 의무이전에 제조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거꾸로 생각하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제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자가 이를 무시한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보다는 경제적인 비용 절감을 우선하고, 실질적인 안전의 확보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만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하고자 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아울러 이를 지도·단속하여야 하는 관계기관의 무관심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다.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1) 사용자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를 가진 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적제품이 시장에서 버젓이 그것도 많은 양의 제품이 유통된다는 것은 사용자(소비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특히 소방제품과 같은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축주가 제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

하는 공사업자나 감리자가 이를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불량제품이 설치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사업자나 감리업자는 구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수를 실시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상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제조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공급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 측면에서의 철저한 검사는 공사업자나 감리업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제조자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제조자 측면에서의 PL대책은 제조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도덕적 의미도 강하다.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해주는 고마운 고객을 위해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제조자 본인의 보호는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송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본적인 표시사항 외에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한 지시와 경고사항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조

〈표 2〉 최근의 미국 PL소송 현황

결함의 종류	경고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부적절한 안전장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소송비율	44%	26%	21%	9%

물에 있어서의 지시, 즉 취급설명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안전을 위해 이렇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이 있다.)을 말하고, 경고는 제품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에 접근, 접촉하는 사용자, 제3자 등에 대해서 제품에 잠재(또는 현재)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의(이러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시와 경고는 모든 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경고라벨에 기재해서 제품 본체에도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라벨 작성의 6가지 기초원칙은 다음과 같다.

- 위험의 정도(Level of Hazard) : 위험의 정도를 경고하여야 함
- 표현의 정도(State Hazard) : 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함
- 위험경고(Describe Consequence) : 경고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함
- 이해의 범위(Show And Tell) : 모든 사용자(어린이와 문맹자 포함)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시인성(Visible and Readable) :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위험예방법(Instruct how to avoid) : 위험을 회피/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함.

④ 맺음말

지금까지 소방·방재제품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표시상의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다. 소방·방재제품은 다른 물품의 불안전이나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제품은 어느 제품보다도 안전에 관하여 철저히하여야 한다. 자신도 불안전하면서 안전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은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품과 관련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고객에 대해서 성실한 제조자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목 있는 소비자가 하나가 되어야만 제조물책임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제조물책임을 단순히 제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만 돌리지 말고 관련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 손해가 발생되고 나서 책임소재를 찾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지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공길택, 제조물책임대응방법론, 2002, 청문각
2. (사)한국PL협회, 중소기업PL대응교육, 2003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물책임사고사례집, 2002
4.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해설및사례, 2002
5.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제품PL자료집, 2002
6.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소방제품 표본조사결과, 2003